

교환계약서

재산의 표시

국유재산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-309 외 13필지 8,717㎡ 8,002,163,500원
(목록별첨)

공유재산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-5 입야 3,656㎡ 7,992,016,000원

위 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서울특별시장은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교환재산의 인계인수) 기획재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기획재정부장관·서울특별시장의 참여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
제2조(소유권 이전) 기획재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,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.

제3조(교환자금) 서울특별시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10,147,500원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약서의 해석)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

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8년 11월 일

중앙관서의 장등 기획재정부장관
등기등록번호 221
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



교환대상자
성 명 서울특별시장
등기등록번호 411
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

교환 재산 목록

□ 국유재산

| 연번 | 소재지 | 지목 | 면적(m ²) | 재산가액(원)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합 계 | | | 8,717 | 8,002,163,500 |
| 1 | 성동구 송정동 73-309 | 구거 | 13 | 11,310,000 |
| 2 | 성동구 송정동 73-318 | 구거 | 17 | 12,903,000 |
| 3 | 성동구 송정동 73-339 | 잡종지 | 1,415 | 1,231,050,000 |
| 4 | 성동구 송정동 73-376 | 구거 | 46 | 40,020,000 |
| 5 | 성동구 송정동 73-405 | 하천 | 1,580 | 1,913,380,000 |
| 6 | 성동구 송정동 73-414 | 구거 | 43 | 37,410,000 |
| 7 | 성동구 송정동 73-415 | 임야 | 592 | 515,040,000 |
| 8 | 성동구 송정동 73-1056 | 답 | 45 | 54,495,000 |
| 9 | 성동구 송정동 73-1060 | 답 | 196 | 170,520,000 |
| 10 | 성동구 송정동 74-231 | 구거 | 23 | 20,010,000 |
| 11 | 성동구 송정동 74-829 | 도로 | 50 | 43,500,000 |
| 12 | 동작구 노량진동 9-1 | 수도용지 | 2,205 | 1,855,507,500 |
| 13 | 동작구 노량진동 1-10 | 수도용지 | 1,464 | 1,231,956,000 |
| 14 | 동작구 노량진동 2-2 | 수도용지 | 1,028 | 865,062,000 |

□ 공유재산

| 연번 | 소재지 | 지목 | 면적(m ²) | 재산가액(원)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합 계 | | | 3,656 | 7,992,016,000 |
| 1 | 서대문구 현저동 산5-5 | 임야 | 3,656 | 7,992,016,000 |

※ 교환차액 : 10,147,500원 (서울특별시시장 → 기획재정부장관)